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2008. 7. 23. 규정 제1482호
개정 2010. 2. 25. 규정 제1692호
전부개정 2015. 4. 23. 규정 제1971호
개정 2016. 12. 26. 규정 제2131호
개정 2017. 10. 16. 규정 제2164호
개정 2018. 7. 1. 규정 제2239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2400호
개정 2024. 2. 26. 규정 제2664호
개정 2025. 5. 22. 규정 제27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북대학교내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6.12.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해 설치된 연구실과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12.26., 2018. 7. 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총장을 말한다.<신설 2018. 7. 1.>
3.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우리 대학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원·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6.12.26., 2018. 7. 1.>
4. “연구실안전관리부서”라 함은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활동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8. 7. 1, 2020. 12. 29.>
5. “연구실관리기관”이라 함은 연구실을 운영하는 대학·대학원·부속기관·지원기관을 말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그 관리기관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12. 29.>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관리기관안전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12. 29.>
7. “연구실관리기관안전담당자”라 함은 관리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연구실 관리 및 안전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0. 12. 29.>
8.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로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9.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여 연구실 관리 및 안전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2. 26, 2020. 12. 29.>
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개정 2018. 7. 1.>
12.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 있는 인자를 말한다.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8. 7. 1.>
14.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란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5. “중대 연구실사고” (이하 “중대사고” 라 한다)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신설 2016.12.26.>

16.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이란 경북대학교 연구실 현황,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afe.knu.ac.kr>)를 말한다.<신설 2018. 7. 1.>

17. “노출도평가” 란 연구활동 중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 12. 29.>

제2장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제4조(연구주체의 장) 연구주체의 장은 총장이 되며, 우리 대학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안전관리총괄본부장, 위원은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재정부처장, 연구산학부처장,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IT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생태환경대학·과학기술대학의 부학장(교무), 대구 및 상주캠퍼스 연구실안전환경총괄관리자로 한다.<개정 2016.12.26., 2017.10.16., 2018. 7. 1., 2020. 12. 29., 2024. 2. 26., 2025. 5. 2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책 수립·수습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삭제 2025. 5. 22.>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신설 2016.12.26., 개정 2017.10.16., 2018. 7. 1., 2020. 12. 29.>

⑧ 위원장은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신설 2018. 7. 1.>

제6조(연구실안전관리부서) 연구실안전관리부서는 안전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개정 2016.12.26., 2020. 12. 29.>

1. 안전관리총괄본부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6.12.26., 2017.10.16., 2025. 5. 22.>

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정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라.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

마.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변경·관리 업무<신설 2016.12.26.>

바.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공제보험관련 업무<신설 2016.12.26.>

사. 연구실 사고 처리 및 사고 보고, 후속 조치에 관한 업무<신설 2016.12.26.>

아.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관리기관안전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현황 및 유형별 관리(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신설 2016.12.26., 개정 2017.10.16., 2020. 12. 29.>

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 실적 관리 <신설 2016.12.26.>

차.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업무<신설 2016.12.26.>

카.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라 한다) 시설 신고 및 수입·신고 업무<신설 2016.12.26.>

타. LMO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관리<신설 2016.12.26.>

파. 실험폐기물(화학폐기물, 의료폐기물) 관리<신설 2016.12.26., 개정 2018. 7. 1.>

하.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6.12.26.>

가. 반도체 관련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나. 안전교육 실적관리 및 보고

3. 연구산학처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6.12.26.>

가. 연구실안전법이 정한 안전관련 예산 확보

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명단 확보·보고

다. 연구산학처 소속 연구시설의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보고(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개정 2020. 12. 29.>

4. 상주캠퍼스 행정지원부는 상주캠퍼스 소속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6조 1호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본부에서 정한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6., 2018. 7. 1., 2025. 5. 22.>

제7조(연구실관리기관) 관리기관의 장은 대학장,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지원기관의 장을 말하며,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2.26., 2020. 12. 29.>

1. 연구실관리기관안전담당자 지정·보고(별지 제1-1호 서식)<신설 2020. 12. 29.>

2. 연구실책임자 지정·보고(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0. 12. 29.>

3. 연구활동종사자 등 안전교육대상자 관리

4. 건강검진·보험가입 대상자 관리

5.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중 각 연구실 관리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조치 시행

6. 연구실관리기관의 안전업무 비상연락망 작성 비치

7. 연구실 사고 발생시 「경북대학교 안전사고 실무 매뉴얼」에 따라 연구실사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총괄본부에 보고하고, 사고조사·사후처리 및 대책 강구 <신설 2016.12.26., 개정 2025. 5. 22.>

8. 일상점검 미실시,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조치<신설 2020. 12. 29., 개정 2025. 5. 22.>

9. 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020. 12. 29.>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총장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 대학의 규모에 맞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2018. 7. 1.>

②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에서 대구 및 상주캠퍼스에서 각각 1인의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6.12.26., 2020. 12. 29.>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2018. 7. 1.>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관리기관안전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 조연·지도<신설 2020. 12. 29.>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6.>

5.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

6. 연구실 사고 처리 및 조치·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6.>

7.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6.>

8. 그 밖의 연구실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6.>

제9조(연구실관리기관안전담당자)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연구실관리기관안전담당자 1인을 지정·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

② 연구실관리기관안전담당자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

③ 연구실관리기관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이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의결 사항
3.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환경의 개선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사항
5. 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기관의 장 보좌

[본조 신설 2020. 12. 29.]

제10조(연구실책임자)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추천하고, 총장은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2020. 12. 29.>

② 장기 부재 등 연구실책임자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1-2호 서식)<신설 2020. 12. 29.>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7. 1.>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의 비치 및 「경북대학교 안전사고 실무 매뉴얼」에 따른 유형별 안전관리<개정 2018. 7. 1.>
2.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개정 2020. 12. 29.>
3.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4. 해당 연구실의 시설물, 장비 및 기계기구, 화학물질 및 폐기물 등의 점검 및 관리
5. 해당 연구실의 안전시설 및 방호설비 설치와 개인 보호 장비의 확보 및 착용 교육<개정 2020. 12. 29.>
6.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이상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개정 2020. 12. 29.>
7. 연구실 사고 발생시 「경북대학교 안전사고 실무 매뉴얼」에 따라 즉시 응급조치 후 안전관리총괄본부와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사고조사·사후처리 및 대책 강구에 협조<개정 2016.12.26., 2020. 12. 29., 2025. 5. 22.>
8. 해당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특성에 맞는 사고 대처방안과 행동요령의 작성 및 교육<개정 2016.12.26., 2018. 7. 1.>
9.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관리<개정 2020. 12. 29.>
10. 휴·퇴직 등 장기 부재시 연구실 약품 등 유해인자 정리<신설 2020. 12. 29.>
11.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지도·관리·감독 등 연구실 안전관리 제반 업무<개정 2020. 12. 29.>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2017.10.16., 2018. 7. 1., 2020. 12. 29.>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6.12.26., 2017.10.16., 2018. 7. 1., 2020. 12. 29.>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1학기 이상 수학한 대학원생으로 지정하며,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과 조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직무를 보좌한다.<개정 2020. 12. 29.>

제12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이수
2.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등의 준수
3. 연구실내 위험요인 발견시 연구개발활동 중단 등의 긴급 조치 및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개정 2016.12.26.>
4. 연구실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후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개정

2016.12.26.>

5. 취급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신설 2018. 7. 1., 개정 2020. 12. 29.>
6. 연구개발활동 시 취급 유해인자에 적합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신설 2020. 12. 29.>
7. 그 밖의 연구실안전과 관련하여 지시받은 사항<신설 2018. 7. 1., 개정 2020. 12. 29.>

제3장 안전환경관리

제13조(안전교육) ①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총괄본부에서 총괄하고, 반도체 관련 연구실에 관한 교육은 반도체융합기술원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12.26., 2017.10.16., 2025. 5. 22.>

② 안전교육은 매 학기마다 법령에 명시된 이수시간 및 내용에 따라 실시하며, 자체집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본부에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2-1호, 제2-2 서식)<신설 2017.10.16., 개정 2018. 7. 1., 2020. 12. 29., 2025. 5. 22.>

③ <삭제 2020. 12. 29.>

④ <삭제 2020. 12. 29.>

③ 총장은 안전교육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2017.10.16., 2020. 12. 29.>

④ 연구실책임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10.16., 개정 2020. 12. 29.>

제14조(안전점검 등) ①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 실태 및 위험요인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③ 총장은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④ 총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노출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15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총장은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② 총장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현황을 조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③ <삭제 2020. 12. 29.>

제16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연구실,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7. 1., 개정 2020. 12. 29.>

제17조(보험가입) ①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26., 2018. 7.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신설 2018. 7. 1.>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신설 2018. 7. 1.>

② 보상의 범위 및 보상금액은 법령에 따른다.<신설 2018. 7. 1.>

제18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총장은 매년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2018. 7. 1.>

② 연구산학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1.>

1.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개정 2020. 12. 29.>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반영된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신설 2018. 7. 1.>

제19조(자료의 제출 등) 안전관리총괄본부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실관리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개정 2020. 12. 29., 2025. 5. 22.>

제20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

② 제1항에 의한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관리기관 및 안전관리총괄본부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개정 2020. 12. 29., 2025. 5. 22.>

③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또는 사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2018. 7. 1.>

④ 연구실책임자 및 해당 연구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해당 연구실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개정 2025. 5. 22.>

1.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2.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3. 연구실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미이행
 4. 그 밖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⑤ 미등록 연구실의 유해인자 취급 실험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실험 중지 및 연구실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은 연구실책임자가 진다.<신설 2020. 12. 29.>
- ⑥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연구실 폐쇄 등 사용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제21조(화학물질의 관리 등) 연구실책임자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 및 비치
2.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3. 화학물질의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내 보관

[본조 신설 2020. 12. 29.]

제4장 사고처리 및 조치

제22조(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 등)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은 「경북대학교 안전사고 실무매뉴얼」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8. 7. 1.>

제23조(사고신고) ①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리기관의 장 및 안전관리총괄본부에 지체없이 사고 발생을 알려야 하고, 사고경위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2020. 12. 29., 2025. 5. 22.>

② 총장은 연구실 사고 발생시 중대사고의 경우 지체없이, 일반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고 발생 현황을 구성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1., 개정 2020. 12. 29.>

제24조(사고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시 7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총괄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개정 2020. 12. 29., 2025. 5. 22.>

② 중대사고 발생시 위원장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2017.10.16.>

③ 사고대책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사고발생 관리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6., 개정 2020. 12. 29.>

제25조(사고조사)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시 현장에 출두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및 안전 관련 전문가, 사고발생 관리기관의 장 등으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2017.10.16., 개정 2020. 12. 29.>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사고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

③ 그 밖의 연구실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은 「경북대학교 안전사고 실무매뉴얼」에 따른다.<신설 2018. 7. 1.>

제26조(부담금) 총장은 필요할 경우 연구실의 안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실관리기관 또는 연구실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제2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48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09호)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7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31호, 2016.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제2항 및 제6조(연구실 안전관리부서)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64호, 2017.10.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39호, 201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00호, 2020.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664호, 2024.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781호, 2025. 5.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0. 12. 29.>

지정 보고서

관리기관명				
구 분	성 명	직 위	지정일자	전화번호
연구실관리기관 안전담당자			20	

경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에 의거 연구실관리기관안전담당자를 상기와 같이 지정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관리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경북대학교총장 귀하

※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실관리기관안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지정 보고서

관리기관명				
연구실	건 물 명			
	연구실명			
	호 실			
구 분	성 명	직 위	지정일자	전화번호
연구실 책임자			20 . . .	

경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에 의거 연구실책임자를 상기와 같이 지정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관리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경북대학교총장 귀하

※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지정 보고서

관리기관명				
연구실	건 물 명			
	연구실명			
	호 실			
구 분	성 명	직 위	지정일자	전화번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20 . . .	

경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에 의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상기와 같이 지정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연구실책임자)

(서명 또는 인)

경북대학교총장 귀하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5. 5. 22.>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번호	학번 또는 시스템 아이디	소 속 학과명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학부생의 경우 출석부로 대체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0. 12. 29.>

고 보 고 서

- 1. 사고일시 :
- 2. 사고장소 :
- 3. 사고자 인적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과명 (연구분야명)	신분	연락처 (휴대폰)
1					
2					

4. 피해내용

상해 내용	사고 유형
물적 피해	

5. 연구실 현황

연구실명 (호실)	보호구 지급여부	보호구 착용여부	최근 안전교육 이수여부		해당년도 연구실 안전점검 등급	사고 당일 일상 점검 실시 여부
			사고자	연구실책임자		

6. 사고경위(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

7. 사고원인(상세히)

-
-
-

8. 재발방지대책

-
-
-

20 . . .

확인자(연구실책임자)

(인)